

의안번호	제 750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숙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11월 21일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숙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11월 21일

발 의 자 : 이숙애, 정영수, 이종욱,
김학철, 임헌경, 윤홍창,
장선배

1. 개정이유

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2조제1항제3호 검정고시수수료를 삭제하고, 수수료 징수 금액에 관한 별표 1의 내용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인당 10,000원을 삭제 함.(안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 법령 : 붙임

다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라. 관계부서 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, 재무과

마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66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수수료 징수 금액(제2조 관련)

구 분	종 류	기준	수수료	비고
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수수료	1. 응시수수료			
	가. 일반시험	1인당	25,000	
	나.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	1인당	35,000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·학 예에 관한 각종수수료(이하 “수 수수료”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삭 제 2. (생 략) 3. <u>검정고시수수료</u> 4. 삭 제 5. (생 략)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(현행과 같음) 3. <삭 제> 5. (현행과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<u>수수료 징수금액</u>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종류</th> <th>기준</th> <th>수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.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</td> <td>1. 응시수수 가. 일반시험</td> <td>1인당</td> <td>25,000</td> </tr> <tr> <td>나.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</td> <td>1인당</td> <td>35,000</td> </tr> <tr> <td>2. 검정고시 수수료</td> <td>1. 고 등 학 교 졸 업 학 력 검 정 고 시 응시수수료</td> <td>1인당</td> <td>1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종류	기준	수수료	1.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	1. 응시수수 가. 일반시험	1인당	25,000	나.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	1인당	35,000	2. 검정고시 수수료	1. 고 등 학 교 졸 업 학 력 검 정 고 시 응시수수료	1인당	10,000	<p>[별표 1] <u>수수료 징수금액</u>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종류</th> <th>기준</th> <th>수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</td> <td>1. 응시수수 가. 일반시험</td> <td>1인당</td> <td>25,000</td> </tr> <tr> <td>나.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</td> <td>1인당</td> <td>35,000</td> </tr> <tr> <td><삭제></td> <td><삭제></td> <td><삭제></td> <td><삭제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종류	기준	수수료	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	1. 응시수수 가. 일반시험	1인당	25,000	나.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	1인당	35,000	<삭제>	<삭제>	<삭제>	<삭제>
구분	종류	기준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	1. 응시수수 가. 일반시험	1인당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	1인당	3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검정고시 수수료	1. 고 등 학 교 졸 업 학 력 검 정 고 시 응시수수료	1인당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종류	기준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	1. 응시수수 가. 일반시험	1인당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	1인당	3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삭제>	<삭제>	<삭제>	<삭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- 제137조(수수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**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-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.>